

石油事業法 改正에 바란다.

『改質·分解·脫黃시설의 新·增設은 신고제로 해야』

鄭 鉉 澤
(京仁에너지 業務課長)

精油業체에 氣息하면서, 정부 정책부서의 문턱을 넘나든지 어언 수삼년에, 금반 動資部에서 현행 事業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하기에, 무슨 나름대로의 심오한 法理나 精油産業에 대한 해박하고 정치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오다 가다 좇아 들은 風月과 주위의 贅辭를 여과하여 “民”의 立場에서 私見을 붓 가는대로 엮어 본다.

1964년 4월 大韓石油公社가 蔚山에 35MB/D의 精油工場을 짓고 그해 9월에 KOSCO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外国人과의 合作이나마 이 땅에 精油産業이 뿌리를 내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현행 石油事業法의 立法目的인—「石油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期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立法趣旨와, 石油産業 특히 精油産業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해야 하는 主務部處의 정책 덕분에, 현하 국내 精油産業은 보호육성보다는 오히려 각종 타율적 제약속에서 위축되었고, 壯大한 790MB/D 施設規模와 6조 3천억원의 外形을 과시하는 外華보다는 오히려 날로 악화되는 收支要因에 의하여, 精油産業은 이미 內貧과 忍苦의 한계상황 속에서 매일 매일 揭示되는

환율의 등락에 따라 고통을 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石油事業法과 同 法規命令 中에서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하고 장기비전에 附合키 위해 關係當局에서 전면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晚時之嘆이 있으나 지극히 온당한 처사라 생각된다. 차체에 動資部는 업계의 棼棼과 제안을, 비록 法的 측면에서 볼 때 疏漏하고 無價值한 所論이나마, 일단은 긍정적인 고려사항으로 여겨 두루 炯眼으로 살펴주시기 바란다.

1. 石油事業法의 立法目的 - 保護育성과 規制의 調和 -

石油事業法의 목적사항중 일부는 「石油事業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云云」으로 成文되어 있는 바 과연 石油事業法 및 同法規命令에 石油産業의 實質의인 保護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租稅關係法 등 他法規에서 精유산업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條項이 있는가?

石油事業法의 字句를 하나 하나 씹어 보면, 精油産業의 保護육성을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精油産業의 육성자체를 調整·구제함으로써 石油에너지의 需給安定을 期하고자 하는 趣旨라고 새기고 싶다.

原資材(原油) 구입에 있어 국내 生産者(精油業者)의 任意선택권을 제한하고, 石油資源에서 부과 징수되는 목적성 있는 基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石油産業에 우선적으로 사용치 못했던 에너지 정책, 備蓄 등에 관한 調整命令이 時宜上 신중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합법성은 심분 있다손 치더라도, 불과 며칠만에 실효성이 흐지 부지되고, 行政刑罰과 秩序罰만 초래하여 한때 官民間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던 行政行爲(適法不當性)… 이런 것들은 石油産業에 종사하는 民이 소망하는 보호육성과 官이 지향하는 국민경제적 차원의 規制가 상호 적절히 조화되지 못한 소치라 할 수 있다.

같은 에너지 관계법규인 石炭鑛業育成에 관한 臨時措置法, 石炭需給에 관한 臨時措置法, 電氣事業法 등에서 열거되고 있는 보호육성 수준과 균형있게 石油事業法에서도 실속있는 授益의 規定이 추가되어, 立法目的과 名實相附한 조정, 육성이 성취되도록 해야 한다.

許可, 免除, 承認 등의 취소등 침해적 행정행위와 調整命令發動을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民 위주인 行政作用의 민주화와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범위내의 規制立法이 되었으면 좋겠다.

2. 事業의 許可

現行: 石油수출입업의 신고

改正案: 石油수출입업을 허가제로 요건강화(施行令 등에서 石油資源 수출입 有經驗者, 備蓄施設 등의 구체적 요건을 追加 明記).

事由: 장차 도래될 石油製品 수출입 自由化시 일반상사의 일시적 국내의 價格差를 노린 HIT & RUN 거래를 제약시키고, 長期需給 安定性확보를 위한 消費地 精製主義의 基調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는 一般石油 수입상사도 精油社가 부담하는 法上 의무만큼 應분의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

3. 石油精製施設 등의 許可

現行: (가) 精製시설의 신증설: 허가제

(나) 常壓蒸溜시설등 5개 시설의 개조: 허가제

改正案: 改質시설, 分解시설, 脫黃시설의 신증

설과 개조는 신고제로 전환

事由: 精油産業의 高度化를 위해서 크래킹시설 등의 신증설 등은 어차피 精油社가 가야할 路程이며, 民間自律經濟 지향의 정책하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은 事業主体가 책임지는 것이지, 결코 정부가 보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民主導의 市場經濟原理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굳이 허가제가 아니더라도 신고제로 하여도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4. 基金의 用途

現行: 石油의 비축 및 저장시설 등 5개 항목

改正案: 다음 目的에 限하여만 지원토록

- 原油도입선 다변화
- 제품수입 差損
- 시설 高度化(크래킹, 탈황 등)
- 備蓄施設 증설
- 油田/가스田 개발

事由: 精油業界가 아무리 경영개선을 하더라도 정부의 유가관리 정책과 精油社의 歸責事由가 아닌 요인에 의하여 精油社는 자체의 내부 축적자본에 의한 시설투자 재원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며, 石油에너지 資源의 수급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國民經濟의 次元에서 볼 때 타부문에 전용할 여유와 명분이 없다.

5. 石油需給 등의 調整

現行: 省略

改正案: 현행 17條 1項의 各号中 다음 号만 그대로 살리고

- 地域別, 主要수급자별 石油配도에 관한 조정
- 石油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 石油製品의 규격 및 定量去來에 관한 조정

○ 余他の 다음 조항을 소제

- 石油精製施設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 石油精製業者의 油種別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 石油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 石油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 石油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상호간

- 의 石油等價교환 또는 分配使用에 관한 조정
- 石油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 石油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 등

○調整命令權을 발동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石油需給 審議會議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것.

事由: 현행의 10개 항목중 7개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視角을 달리해서 보면 정부의 強權發動으로 인한 인위적 조작은 오히려 民間自律의 經濟順理에 맞기는 것 보다 효과가 比較劣位가 될 것이다. 즉, 除去利益보다는 放置利益이 클 것이며, 꼭 필요하다면 適正水準의 행정지도로 가름해도 대등한 효과가 올 것이다.

6. 石油需給調整 審議委員會(新設)

○目的:

- 民이 가진 石油사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석유정책 수립에 助言 내지 反省
- 행정기관의 裁量行爲(公益裁量)의 濫用(만일의 경우)으로 인한 民의 권리·이익의 제한 내지 침해를 예방키 위함.

○構成: 學界, 業界, 官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15인 이내.

* 물론 立法 기술상 石油産業의 복잡다양, 流動性 때문에 內延의 모든 행정행위를 羈束性있게 法規나 命令으로 모두 담을수는 없어 때로는 裁量權의 濫用처럼 보이는 경우가 불가피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봐서 公益, 平等, 比例原則 등이 다소 결여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附議對象: 調整命令權 발동 및 해제, 許可대상 사업의 타당성審議, 行政罰 부과 및 刑量결정, 기타 動資部長官의 요청사항 등

7. 石油事業法域의 分離 — 石油事業法, 備蓄法(仮稱), 油田開發促進法(仮稱)

현행 石油事業은 다 잘 알다시피 法 制定當時(1975)의 경제·사회여건과 立法 환경을 배경으로 한 石油에너지法이었으므로 현실의 국내의 石油에너지정세, 산업구조, 경제운용정책 등과 괴리되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國家長期 에너지정책과 法運用面の 효율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

지에서 현행 石油事業法을

- (가) 石油事業法
- (나) 石油備蓄法(仮稱)
- (다) 油田開發促進法(仮稱)

으로 三分한 單行立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石油事業法은 현행 法域에서 石油비축부문(民間과 國家 포함)을 공제한 영역으로 하고,

○石油備蓄法은

- 적정수준의 原油 및 중요제품의 확보를 위한 조치강구
- 공급부족시의 備蓄油환용계획
- 備蓄시설규모, 備蓄油種 및 物量 등의 장기목표책정 및 재원조달과 지원 등을 규제토록 하고,

○油田開發促進法은

- 현행의 海의資源開發 促進法 영역에서 油田/가스田 개발부문을 따로 떼어내고 國內油田開發分野를 이에 추가하여 規制法域으로 하 되,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石油資源의 개발수입과 油田開發事業의 안정성장을 도모케 하고,
- 외국인(非居住者)과의 合作·油田開發財源의 조달과 상환 및 기술개발, 租鑛權과 租鑛區 확보 등을 통한 國際經濟協力 증진을 규제토록 한다.

8. 原油, 天然가스의 輸送契約의 承認制를 申告制로 전환

現行: 原油, 天然가스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動資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動資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原油, 天然가스의 수송계약을 체결한 者는 이를 動資部長官에게 신고토록.

事由: 현행 關聯法規를 구분하면, 海運産業育成法에서는 原油 등을 指定貨物로 정하여 國籍船利用을 제고함으로써 海運産業을 육성케 하고 이로써 안정적인 수송수단을 확보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石油事業法에서는 國內油價安定을 위하는 측면에서 運賃率의 적정성과 滯船料 지급부문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石油事業 施行令에서도 이미 일정 기준이

하의 航次別 原油輸送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하고 있으나, 要는 현행의 승인대상인 계약을 꼭 승인제로 해야 할 法益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海運產業育成法에서 原油 등의 国籍船 積取率 제고를 위한 強行規定을 두고 있고, 실사 国外備船에 비하여 다소 運賃率面에서 불리하더라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原油 등의 수입자 역시 動資部가 運賃率을 승인제

로 사전 규제치 않더라도, 配船要請, 原価節減等, 코스트 다운의 經濟原理를 충실하게 추구하여 비즈니스를 할 것이므로 石油事業法의 立法目的과 결과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民間自律과 民間主導經濟政策의 정신에 입각하여 官의 干渉는 가급적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멕시코, 제 2 송유관 건설추진

—마야原油, 아시아國으로 수출강화 위해—

멕시코가 太平洋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戰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멕시코灣과 太平洋을 이을 石油파이프라인 증설을 핵심으로 하여 석유수출선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한편 태평양안의 공업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同國은 82년의 경제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막 회복된 상태다. 그런 까닭에 同國을 경제체질전환의 秘方으로 생각하고 日本, 韓國, 台灣 등 아시아제국에 정력적인 판로확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 內容은 ① 동해안의 누에보테아파로부터 서해안의 사리나쿨츠를 연결하는 大口徑 석유파이프라인의 증설 ② 사리나쿨츠에 20만톤급 탱크 2척, 6만톤급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 건설 ③ 同港의 석유저장탱크 증설 등이다. 멕시코만안에서 산출하는 마야原油(중질유)를 태평양안으로 공급코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종래, 마야원유는 멕시코만에서 수출해 왔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은 경질유인 이스무스原油 專用이다. 그 때문에 日本으로 수출되고 있는 하루 16만배럴의 원유도 13만배럴까지가 이스무스이고 마야는 얼마안되는 3만배럴이다. 그렇지만 이스무스가 가격이 싸고 작년말 이래 同國의 日원유수출량은 10만배럴 수준까지 격감하였다.

석유를 경제의 명맥으로 삼고 있는 멕시코는 국제경쟁력 있는 마야의 增産,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야를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아시아에 안정적인 수

출선을 얻고자 하는 의미이다. 멕시코 石油의 최대의 시장인 美國도 서서히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

또한 同國은 同國이 남부 태평양안에 건설중인 라사로·칼데나스工業港에의 에너지공급이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同공업항 건설에는 日本企業도 많이 참가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공사의 지연이나 규모의 축소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同國 공업개발의 최우선 지역이다. 완공시에는 同國경제의 중핵으로서 철강, 비료, 전력 등 13개 프로젝트가 가동될 예정이다.

석유의 안정적 수출이나 과도하게 美國에 기울어진 경제체질의 修正, 그 위에 국내산업의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 同計劃에 거는 멕시코정부의 기대는 크다. 작년의 GDP(국내총생산)는 실질베이스로 3.5% 증가를 기록한 同國였지만 회복의 견인차였던 것은 對美輸出의 신장으로, 지금은 美國경기 둔화와 아울러 무역수지흑자도 감소경향에 있다.

단지 이 태평양계획이 멕시코의 의도대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문제도 있다. 당면하고 있는 장애는 뭐라해도 外貨고갈로서, 900억달러 남짓한 누적체무나 원유가격의 저하가 자금조달에 족쇄가 되고 있다. 또한 수출선 各國은 멕시코産 원유수입증가에 지금 하나도 마음내키지 않는 사정도 있다. *